

전임교원연봉제운영규정

2009.09.01.제정 2010.04.01.일부개정 2012.07.22.일부개정 2012.09.01.일부개정
2012.12.01.일부개정 **2024.03.28.일부개정**

<교무팀>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교직원보수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전임교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01.)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2009년 9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전임교원(기간제 제외, 이하 “전임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0.04.01.)

제 3 조 (연봉) ①연봉은 봉급, 연구보조비, 정액급식비 및 제수당(교과연구비, 장기근속수당, 상여수당, 성과급)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4.01, 2012.7.22.)

②직급별 연봉표는 <별표 1>과 같으며, 연봉의 구성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04.01.)

③신규임용시에는 경력 중 우수한 경력을 사정한 후 <별표 1>에 따라 각 직급별로 5개 호봉단계로 구분하여 연봉호봉을 책정하며, 조교수 신규임용은 원칙적으로 조교수A 연봉표를 적용하되 경력이 우수할 경우 조교수B 연봉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경력사정 및 호봉부여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4.01, 2012.7.22.)

④신규임용 이후의 연봉은 전임교원 전체 정기업적평가 순위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성과등급을 산정하고, 현 연봉호봉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04.01.)

⑤승진임용시에는 현 직급 호봉과 동일한 호봉의 상위 직급 연봉호봉에 따라 연봉을 지급한다. (개정 2010.04.01)

⑥직급별 연봉 상한액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0.04.01.)

⑦ 조교수A의 연봉표를 적용하는자의 재임용 계약시에는 현 연봉호봉과 동일한 호봉의 조교수 B 연봉호봉을 적용한다. (신설 2012.7.22.)

제 4 조 (연봉외 지급 수당) ①교직원보수규정상의 가족수당, 보육수당, 보직수당, 책임교수수당, 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초과강의수당, 명예퇴직수당, 퇴직금 및 공무로 인한 부상과 사망위로금은 교직원보수규정 상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교원에 한하여 연봉과 별도로 지급한다. (개정 2010.04.01, 2012.12.1.)

②성과급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04.01.)

③국가전문자격소유자(의사, 수의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3.28.)

제 5 조 (계약체결 및 지급방법) ①연봉계약은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시에 체결하며, 차년도 이후는 연봉내역서를 통지한다. (개정 2010.04.01.)

②연봉은 연봉 총액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되,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0.04.01.)

③2년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이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0.04.01.)

④징계, 휴직,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중의 보수는 정관 및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다. (신설2010.04.01.)

⑤학년도 중에 신규임용되는 교원의 연봉은 당해 학년도 말까지 적용하고, 차년도 3월 1일자로 재산정하며, 재산정시 <별표 3>을 적용하지 않고, 연구실적이 있을 경우 1학기 중 임용자는 현 연봉호봉에 2호봉을 가산하고, 2학기 중 임용자는 현 연봉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 재산정한다. (신설 2010.04.01.)

⑥사학연금, 건강보험 등의 관련법에 의하여 가입된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 및 각종 세금은 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0.04.01.)

제 6 조 (준용) 교직원보수규정 중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제18조, 제20조는 연봉제 교원의 보수지급시 준용한다. (개정 2010.04.01.)

부 칙

①(시행일) 본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3월분 급여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2009년 9월 1일 및 10월 1일자로 신규임용된 전임교원은 2010년 3월 1일부터 본 규정에 따라 재산정하여 지급하되 소급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규정 개정일 현재 재직 중인 전임강사는 조교수A에 해당하는 연봉표를 적용한다. 단, 2012년 3월 1일자 재임용된 교원은 2013년 3월 1일부터 조교수B에 해당하는 연봉표를 적용한다.

② 규정 개정일 현재 재직 중인 조교수는 조교수B에 해당하는 연봉표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재직 중인 연봉제 교원의 연봉은 2013년 3월 급여부터 이 규정에 따라 재산정하여 지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만, 보육수당과 관련한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가전문자격소유자(의사, 수의사)에 대한 수당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직급별 연봉표 (개정 2012.7.22, 2012.9.1.)

단위 : 천원

연봉호봉	조교수A	조교수B	부교수	교수	비고
1호	45,000	48,000	53,000	59,000	조교수A 신규임용시 1~5호
2호	46,000	49,000	54,000	60,000	
3호	47,000	50,000	55,000	61,000	
4호	48,000	51,000	56,000	62,000	
5호	49,000	52,000	57,000	63,000	조교수B 신규임용시 5~9호
6호	50,000	53,000	58,000	64,000	
7호	51,000	54,000	59,000	65,000	
8호	52,000	55,000	60,000	66,000	
9호	53,000	56,000	61,000	67,000	부교수 신규임용시 9~13호
10호	54,000	57,000	62,000	68,000	
11호	55,000	58,000	63,000	69,000	
12호		59,000	64,000	70,000	
13호		60,000	65,000	71,000	교수 신규임용시 13~17호
14호		61,000	66,000	72,000	
15호		62,000	67,000	73,000	
16호		63,000	68,000	74,000	
17호		64,000	69,000	75,000	
18호		65,000	70,000	76,000	
19호		66,000	71,000	77,000	
20호		67,000	72,000	78,000	
21호		68,000	73,000	79,000	
22호		69,000	74,000	80,000	
23호		70,000	75,000	81,000	
24호			76,000	82,000	
25호			77,000	83,000	
26호			78,000	84,000	
27호			79,000	85,000	
28호			80,000	86,000	
29호			81,000	87,000	
30호			82,000	88,000	
31호			83,000	89,000	
32호			84,000	90,000	
33호			85,000	91,000	
34호				92,000	
35호				93,000	
36호				94,000	
37호				95,000	
38호				96,000	
39호				97,000	
40호				98,000	
41호				99,000	
42호				100,000	
43호				101,000	
44호				102,000	
45호				103,000	
46호				104,000	
47호				105,000	
48호					
49호					
50호					
	55,000	70,000	85,000	105,000	직급별 연봉 상한액

< 별표 2 > 연봉의 구성항목 (개정 2012.7.22, 2012.9.1.)

※ 연봉 : 봉급(월) + 연구보조비(월) + 정액급식비(월) + 제수당(연)

※ 제수당 : 교과연구비, 장기근속수당, 상여수당, 성과급

※ 조교수B, 부교수, 교수의 초임 연봉호봉 이전 연봉의 구성항목은 이전 직급의 연봉의 구성항목과 같다.

1. 조교수 A

단위 : 원

연봉호봉	연봉	봉급(월)	연구보조비(월)	정액급식비(월)	제수당(연)
1호	45,000,000	1,500,000	850,000	130,000	15,240,000
2호	46,000,000	1,525,000	850,000	130,000	15,940,000
3호	47,000,000	1,550,000	850,000	130,000	16,640,000
4호	48,000,000	1,575,000	850,000	130,000	17,340,000
5호	49,000,000	1,600,000	850,000	130,000	18,040,000
6호	50,000,000	1,625,000	850,000	130,000	18,740,000
7호	51,000,000	1,650,000	850,000	130,000	19,440,000
8호	52,000,000	1,675,000	850,000	130,000	20,140,000
9호	53,000,000	1,700,000	850,000	130,000	20,840,000
10호	54,000,000	1,725,000	850,000	130,000	21,540,000
11호	55,000,000	1,750,000	850,000	130,000	22,240,000

2. 조교수 B

단위 : 원

연봉호봉	연봉	봉급(월)	연구보조비(월)	정액급식비(월)	제수당(연)
5호	52,000,000	1,700,000	950,000	130,000	18,640,000
6호	53,000,000	1,725,000	950,000	130,000	19,340,000
7호	54,000,000	1,750,000	950,000	130,000	20,040,000
8호	55,000,000	1,775,000	950,000	130,000	20,740,000
9호	56,000,000	1,800,000	950,000	130,000	21,440,000
10호	57,000,000	1,825,000	950,000	130,000	22,140,000
11호	58,000,000	1,850,000	950,000	130,000	22,840,000
12호	59,000,000	1,875,000	950,000	130,000	23,540,000
13호	60,000,000	1,900,000	950,000	130,000	24,240,000
14호	61,000,000	1,925,000	950,000	130,000	24,940,000
15호	62,000,000	1,950,000	950,000	130,000	25,640,000
16호	63,000,000	1,975,000	950,000	130,000	26,340,000
17호	64,000,000	2,000,000	950,000	130,000	27,040,000
18호	65,000,000	2,025,000	950,000	130,000	27,740,000
19호	66,000,000	2,050,000	950,000	130,000	28,440,000
20호	67,000,000	2,075,000	950,000	130,000	29,140,000
21호	68,000,000	2,100,000	950,000	130,000	29,840,000
22호	69,000,000	2,125,000	950,000	130,000	30,540,000
23호	70,000,000	2,150,000	950,000	130,000	31,240,000

3. 부교수

단위 : 원

연봉호봉	연봉	봉급(월)	연구보조비(월)	정액급식비(월)	제수당(연)
9호	61,000,000	1,925,000	1,050,000	130,000	23,740,000
10호	62,000,000	1,950,000	1,050,000	130,000	24,440,000
11호	63,000,000	2,075,000	1,050,000	130,000	23,940,000
12호	64,000,000	2,100,000	1,050,000	130,000	24,640,000
13호	65,000,000	2,125,000	1,050,000	130,000	25,340,000
14호	66,000,000	2,150,000	1,050,000	130,000	26,040,000
15호	67,000,000	2,175,000	1,050,000	130,000	26,740,000
16호	68,000,000	2,200,000	1,050,000	130,000	27,440,000
17호	69,000,000	2,225,000	1,050,000	130,000	28,140,000
18호	70,000,000	2,250,000	1,050,000	130,000	28,840,000
19호	71,000,000	2,275,000	1,050,000	130,000	29,540,000
20호	72,000,000	2,300,000	1,050,000	130,000	30,240,000
21호	73,000,000	2,325,000	1,050,000	130,000	30,940,000
22호	74,000,000	2,300,000	1,050,000	130,000	32,240,000
23호	75,000,000	2,320,000	1,050,000	130,000	33,000,000
24호	76,000,000	2,340,000	1,050,000	130,000	33,760,000
25호	77,000,000	2,360,000	1,050,000	130,000	34,520,000
26호	78,000,000	2,380,000	1,050,000	130,000	35,280,000
27호	79,000,000	2,400,000	1,050,000	130,000	36,040,000
28호	80,000,000	2,420,000	1,050,000	130,000	36,800,000
29호	81,000,000	2,440,000	1,050,000	130,000	37,560,000
30호	82,000,000	2,460,000	1,050,000	130,000	38,320,000
31호	83,000,000	2,480,000	1,050,000	130,000	39,080,000
32호	84,000,000	2,500,000	1,050,000	130,000	39,840,000
33호	85,000,000	2,520,000	1,050,000	130,000	40,600,000

4. 교수

단위 : 원

연봉호봉	연봉	보급(월)	연구보조비(월)	정액급식비(월)	제수당(연)
13호	71,000,000	2,275,000	1,100,000	130,000	28,940,000
14호	72,000,000	2,300,000	1,100,000	130,000	29,640,000
15호	73,000,000	2,325,000	1,100,000	130,000	30,340,000
16호	74,000,000	2,350,000	1,100,000	130,000	31,040,000
17호	75,000,000	2,375,000	1,100,000	130,000	31,740,000
18호	76,000,000	2,400,000	1,100,000	130,000	32,440,000
19호	77,000,000	2,425,000	1,100,000	130,000	33,140,000
20호	78,000,000	2,450,000	1,100,000	130,000	33,840,000
21호	79,000,000	2,475,000	1,100,000	130,000	34,540,000
22호	80,000,000	2,500,000	1,100,000	130,000	35,240,000
23호	81,000,000	2,525,000	1,100,000	130,000	35,940,000
24호	82,000,000	2,550,000	1,100,000	130,000	36,640,000
25호	83,000,000	2,575,000	1,100,000	130,000	37,340,000
26호	84,000,000	2,600,000	1,100,000	130,000	38,040,000
27호	85,000,000	2,625,000	1,100,000	130,000	38,740,000
28호	86,000,000	2,650,000	1,100,000	130,000	39,440,000
29호	87,000,000	2,675,000	1,100,000	130,000	40,140,000
30호	88,000,000	2,700,000	1,100,000	130,000	40,840,000
31호	89,000,000	2,725,000	1,100,000	130,000	41,540,000
32호	90,000,000	2,750,000	1,100,000	130,000	42,240,000
33호	91,000,000	2,775,000	1,100,000	130,000	42,940,000
34호	92,000,000	2,800,000	1,100,000	130,000	43,640,000
35호	93,000,000	2,825,000	1,100,000	130,000	44,340,000
36호	94,000,000	2,850,000	1,100,000	130,000	45,040,000
37호	95,000,000	2,875,000	1,100,000	130,000	45,740,000
38호	96,000,000	2,900,000	1,100,000	130,000	46,440,000
39호	97,000,000	2,925,000	1,100,000	130,000	47,140,000
40호	98,000,000	2,950,000	1,100,000	130,000	47,840,000
41호	99,000,000	2,975,000	1,100,000	130,000	48,540,000
42호	100,000,000	3,000,000	1,100,000	130,000	49,240,000
43호	101,000,000	3,025,000	1,100,000	130,000	49,940,000
44호	102,000,000	3,050,000	1,100,000	130,000	50,640,000
45호	103,000,000	3,075,000	1,100,000	130,000	51,340,000
46호	104,000,000	3,100,000	1,100,000	130,000	52,040,000
47호	105,000,000	3,125,000	1,100,000	130,000	52,740,000

< 별표 3 > 성과등급 산정기준 (개정 2012.7.22, 2012.9.1.)

등 급	가산 호봉 기준			
	조교수 A	조교수 B	부교수	교수
S등급 (전임교원 정기업적평가 순위 상위 10%이내)	4호	4호	4호	4호
A등급 (전임교원 정기업적평가 순위 상위 30%이내)	3호	3호	3호	3호
B등급 (전임교원 정기업적평가 순위 상위 70%이내)	2호	2호	2호	2호
C등급 (전임교원 정기업적평가 순위 상위 90%이내)	1호	1호	1호	1호
D등급 (기타)	동결	동결	동결	동결